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을호의원·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정을호·정혜경·홍기원
손 솔·최혁진·전종덕
김문수·진선미·윤종오
이용우·박 정·강경숙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,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8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의 제목 “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”를 “(녹색생활 운동 지원·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”을 “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과 「교육기본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, 교원 연수, 교육과정 개발,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
2. 일반 교양교육, 직업교육,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·연계한 교육 강화
3. 기후환경교육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<u>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</u> 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·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	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·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과 「교육기본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정부는 <u>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, 일반 교양교</u>	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<u>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</u>

<u>육, 직업교육,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·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 ⑥·⑦ (생략)	<u>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 <u>1.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, 교원 연수, 교육과정 개발,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</u> <u>2. 일반 교양교육, 직업교육,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·연계한 교육 강화</u> <u>3. 기후환경교육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</u> ⑥·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